2009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

'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,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,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, 생산, 유통,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.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편집부〉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	〈신 규〉	o 어린이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회수·판매금지를 권고하고 권고 사실의 공표 제도 시행 o 보육시설, 유치원, 학교, 놀이시설 관리·소유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※ 위반 시 개선명령, 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	환경보건법 ('09. 3. 21 시행)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02-2110-6962)
2	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 추가	o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 성적서 - 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유전독성 시험 성적서 - 분해성 시험 성적서 - 어류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물벼룩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조류급성독성 시험 성적서	o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 성적서 - 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유전독성 시험 성적서 - 분해성 시험성적서 - 어류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물벼룩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조류급성독성 시험 성적서 - 피부자극성 시험 성적서 - 눈자극성 시험 성적서 - 피부과민성 시험 성적서	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('09. 7. 2)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02-2110-6962)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3	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강화	○ 수질오염물질(41종) - 유류, 질소, 니켈, 아연 등 ○ 특정수질유해물질(19종) - 수은, 시안, 벤젠, 페놀 등	○ 수질오염물질(47종) - 퍼클로레이트, 1,4-다이옥산, 비스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, 브로모포름 등 6개 물질 추가 ○ 특정수질유해물질(24종) - 1,4-다이옥산, 비스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,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 추가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'09. 1. 30시행)	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(02-2110-6848)
4	토양오염도검사 주기 완화	o 토양오염도 검사 -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 후 3 · 6년이 되는 해 - 15년 이전 매2년 마다 - 15년 이후 매년 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. o 누출검사 -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 된 후	o 토양오염도검사 -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 후 5 · 10 · 15년이 되는 해 - 15년 이후 매 3년 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. o 누출검사 - 저장시설 설치 후 20년이 경과 된 후	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[별표4] 개정 중	환경부 토양지하수과 (02-2110-6772)
5	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	o 낙동강수계 위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- 산업단지 조성면적 150만제곱미터 이상 -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 -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, 취수시설 상류지역 또는 하천인접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	o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현행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을 추가	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'09. 12. 8 국회통과, '09. 7.월 시행예정)	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(02-2110-6844)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6	환경영향평가 항목·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 (Scoping)의무화	○ 사업자 신청주의로 스코핑제도 시행	○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스코핑절차를 의무화하여 평가항목·범위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	환경영향평가법 ('09. 4. 1시행)	환경부 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
	환경영향평가에 간이평가절차 도입	○ 평가서초안 의견수렴, 평가서 작성, 평가협의, 사후관리 등 일률적으로 평가협의 절차를 규정	○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 ※ 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 ※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	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	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
	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	○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변경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사회적 분쟁 발생	○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사전 방지 ※ 평가협의 이후 재협의 대상규모의 변경 ※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	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	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
	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환경부 설치·운영	○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를 협의기관에서 실시	○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하여 심의의 객관성·공정성강화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유도	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	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
	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	○ 평가협의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모두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사전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	○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절차를 생략 ※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확대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대상	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	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
	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	○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완료 전의 공사는 사전공사 해당	○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 허용 ※ 현장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설치,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으로서 미리 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공사	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	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

<table>
<tr><th>번호</th><th>제 목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관련법규 및 시행일</th><th>관계부서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6</td><td>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</td><td>o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</td><td>o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폐지, 협의기준은 일반 협의내용으로 관리
※ 협의기준초과 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</td><td>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</td><td>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</td></tr>
<tr><td>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</td><td>o 평가서등에 대한 대행계약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 계약</td><td>o 대행계약 중 평가계획서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서(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외)에 대한 대행계약은 분리계약 의무대상에서 제외</td><td>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</td><td>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</td></tr>
<tr><td>협의내용관리 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</td><td>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건설산업관리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</td><td>o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지원 중 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의 자격인정범위로 지정, 또는 평가대행자, 환경컨설팅회사 등에게 대행
※ '09. 6. 30일까지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</td><td>환경영향평가법 ('09. 1. 1시행)</td><td>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</td></tr>
<tr><td>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</td><td>o 지방환경청에서 평가대행자 등록업무 수행</td><td>o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
※ 위탁업무내용 : 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, 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 접수, 평가대행 실적보고 접수</td><td>환경영향평가법 ('09. 4. 1시행)</td><td>환경평가과 (02-2110-6709)</td></tr>
<tr><td>7
·
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강화</td><td>o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[별표8] 공사장 소음규제기준
<table>
<tr><th>대상 지역</th><th>아침, 저녁 (05:00~07:00, 18:00~22:00)</th><th>주간 (07:00~18:00)</th><th>야간 (22:00~05:00)</th></tr>
<tr><td>주거지역, 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·병원·공공도서관</td><td>60 이하</td><td>70 이하</td><td>55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밖의 지역</td><td>70 이하</td><td>75 이하</td><td>55 이하</td></tr>
</table></td><td>o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
<table>
<tr><th>대상 지역</th><th>아침, 저녁 (05:00~07:00, 18:00~22:00)</th><th>주간 (07:00~18:00)</th><th>야간 (22:00~05:00)</th></tr>
<tr><td>주거지역, 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·병원·공공도서관</td><td>60 이하</td><td>65 이하</td><td>50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밖의 지역</td><td>65 이하</td><td>70 이하</td><td>50 이하</td></tr>
</table></td><td>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('09. 1월중 시행예정)</td><td>환경부 생활환경과 (02-2110-6814)</td></tr>
</table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8	환경산업육성 융자금지원제도 시행	〈신 규〉	o 국내 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,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"환경산업육성융자금 지원제도" 시행 o 제도 개요 – 융자금 규모 : 100억원('09년) – 지원대상 :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산업체 – 지원절차 :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융자신청접수 · 심의 후 협약은행(시중은행)을 통해 융자 지원 ※ 기타 지원용도, 지원조건,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하는 환경산업육성융자금 융자요강 참고	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('01. 12. 31 시행)	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산업과 (02-2110-6680)
9	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	o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 지원 o 지원대상(1톤이상 ~10톤미만)	o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(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비롯한 오염우심지역으로 확대 지원) – 대전광역시, 포항시 추가 o 지원대상(10톤 미만) – 1톤 미만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	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업무 처리 지침 ('09. 1. 1)	환경부 대기관리과 (02-2110-6797)
10	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 추가	o VOCs 종류를 37종으로 한정	o 배출시설 외 관리대상 VOCs의 종류를 1기압 250℃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(TVOCs)로 확대 –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등에 적용 o 배출시설에 대한 VOCs 종류는 37종으로 현행과 동일	휘발성 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(개정 '07. 8. 7, 시행 '09. 7. 1)	환경부 대기관리과 (02-2110-6797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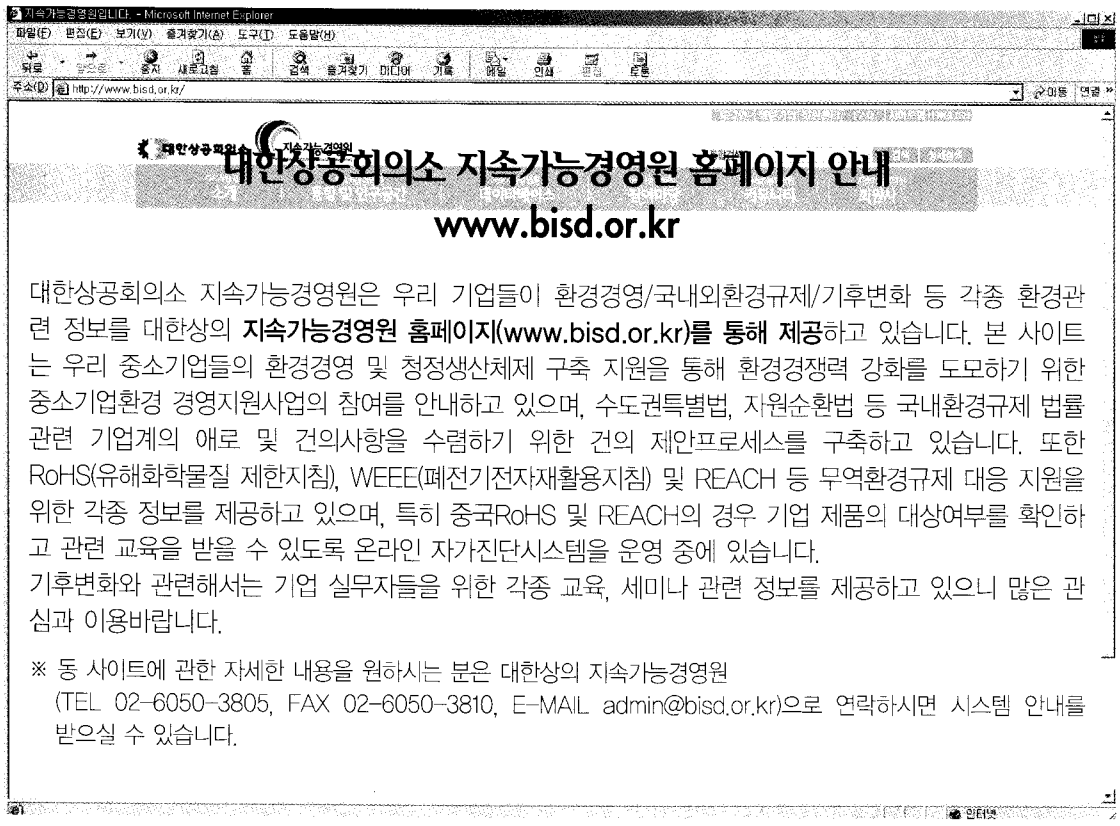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1	휘발유 · 가스차에 대한 평균배출량 제도(FAS) 도입 · 시행	〈신 규〉	o 휘발유 및 가스차의 배출기준을 2개 그룹(소형승용 및 1.7톤미만 소형화물, 중형승용 및 1.7톤이상 소 · 중형화물)으로 구분, 배기관 가스(탄화수소) 평균값을 설정 – 평균배출량 미달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계획서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'09. 1. 1 시행)	환경부 교통환경과 (02-2110-6809)
12	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	〈신 규〉	o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 o 최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하여는 저탄소 인증마크 부여	–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 법률개정 예정 – 법률 개정 전에는 환경부 고시로 우선 시행예정('09. 1월 고시) – 2009. 1월부터 시행	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(02-2110-7718)